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 - 8호

『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월 2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,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증가(안 제4조제1항)
- 나. 위촉위원의 구성 관련 자격요건 구체화(안 제4조제3항)
- 다.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다. 제출방법

- 제출처: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
- 전 화: 032-440-6264
- 팩 스: 032-440-8784
- 이메일: runhi@korea.kr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만용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18.

발 의 자 : 최만용

(찬성자 6명)

1. 제안이유

-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,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증가(안 제4조제1항)
 - 7명 이상 11명 이하 → 7명 이상 13명 이하
- 위촉위원의 구성 관련 자격요건 구체화(안 제4조제3항)
 - 지방의회의원,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
-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(안 제5조)
 - 연임 가능 →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**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1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도서관 운영”을 “도서관 또는 독서진흥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방의회의원

제5조제1항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신규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 명 이상 <u>11명</u>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	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3</u> <u>명</u> ----- 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을 당연직 위원 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, 특 정 성(性)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 며,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</u>	2. <u>도서관 또는 독서진흥</u> 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지방의회의원</u>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 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</u> 할 수 있다.	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 차례만 연임</u> 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도서관법 ○ 제28조(업무) ○ 제30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도서관법】

제28조(업무)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,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
2.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
3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4.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
6.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
7.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
제30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본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
위원의 활동에 따라 참석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참석 수당
및 여비 등으로 소요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
추정됨

4. 작성자

교육위원회 최 만 용 의원